

구술조사를 통해 본 우키시마호 소송 참가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인식



김 인 성 (충남대학교)
(feuille06@korea.ac.kr)

국문요약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 경 오미나토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교토부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 이 배에는 3,700명~1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들이 타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사망자수를 524명이라 발표하였으나, 목격자들은 3천~8천명이 사망하였다고 증언한다.

1992년 8월 25일 생존자와 사망자의 유족들로 구성된 80명의 한국인들이 일본 법정에서 일본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부분승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원고인들의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소송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은 일본에 거주하는 송두회와 '진상과 배상을 촉구하는 모임'의 일본인들이었다. 원고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한국 언론과 한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사건이다. 일본국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통해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주고자 했던 유족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와 함께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무관심이다. 우키시마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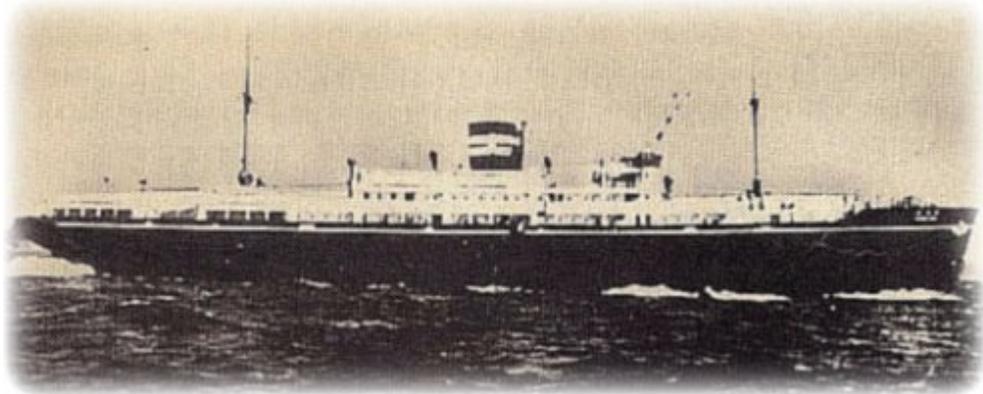
주제어 : 우키시마호, 일제잔재청산,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구술조사

I. 서론

1. 사건의 개요와 연구 목적

1) 사건과 소송의 개요

일제강점기에 아오모리(靑森)현에 강제동원되었던 3,700~1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들은 일본 해군의 명령에 따라 오미나토(大湊)항에서 부산행 일본 해군 선박인 우키시마호(浮島丸)에 탑승한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오후 10시경 오미나토항을 출발하여,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 경 교토(京都)부 마이즈루(舞鶴)항 앞바다에서 침몰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정부 발표에 따르면 524명의 조선인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3천~8천 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 후 70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선인원, 출항이유, 침몰원인, 사망자수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림 1〉 우키시마호 사진

1992년 8월 25일, 우키시마호 침몰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교토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내용은 1) 일본국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공식 사죄(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와 입법부작위), 2)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제27조와 ‘일본국헌법(현행헌법) 제29조 유추적용을 통한 손실보상, 3)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 4) 친자 소유권에 기초한 유골반환 청구 등 4가지이다.¹⁾ 소송진행과정에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9, 14)

서 일본인 민간단체와 일본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소송을 지원하였다. 원고인단은 소송과정에서 증감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80명의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에 참여하였다.

2001년 8월 23일 도쿄지방법재판소에서의 1심판결에서 원고들 중 승선 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15명에게는 일괄 300만 엔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일부승소한 바 있다. 한편 2003년 5월 30일의 오오사카 고등재판소 2심판결과 2004년 11월 30일의 최고재판소의 최종심에서 일본법정의 판결에 따라 원고측은 패소하였다.

2) 연구의 목적



1994년 8월 24일, 京都府舞鶴市 撮影・中山和弘

〈그림 2〉 우키시마호 침몰 장소에서 열린 추모식(사진제공: 전승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조사는 다수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다양한 서적들로 출간되어 왔다.²⁾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구술 내용은 다양한 형태

2)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출판된 주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도즈카 에츠로(2001); 릿쿄대학 사학과(1993);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2005); 사이트 사쿠지(1998); 여성부(2002); 요시미 요시아키(1998); 우쓰미 아이코(2007); 이토 다카시(2013); 정혜경(2011); 정혜경(2013a); 정혜경(2013b); 정혜경(2013c); 조지 힉스(1995);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200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a);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b);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c);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d);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e);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f);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a);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a);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b);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c);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d);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e);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9).

의 피해에 관련한 진상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리고 특정한 역사의 체험자로서의 그들의 증언은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술자들의 증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완전성과 개인적 체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정받는 데는 한계를 보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과거사 관련 각종 소송에서 이들의 증언이 증거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조선 지배로 인해 징용·징병·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조선인 BC급 전범 등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에서 40여 건의 대일과거청산소송을 진행하여 왔다.³⁾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동원 피해와 관련한 한국학계의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이다.⁴⁾ 피해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일본학자들이나 일본의 민간단체들에 의해 생산되어 왔다. 게다가 이러한 자료들을 과거사 청산과 결부된 논리로 재생산하는 데도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정부, 학계, 언론 등의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과거사 청산 소송에 참여했던 이들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소송과정 자체에 대한 인식도 피해당사자의 과거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소송당사자들, 즉 원고인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 소송과정에서 이들이 느꼈던 역사해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송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들의 증언은 과거사를 청산해 나가는 작업의 역사의 하나로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소송에 참가했던 원고인들의 구술조사를 토대로 이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 소송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과거사에 대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현대적 시점에서의 인식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자, 앞으로도 지속된 과거사 청산 작업, 특히 향후의 소송이나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김창록(2007, 380-395)

4)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주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강정숙(2002); 강정숙(2003a); 강정숙(2003b); 강정숙(2005a); 강정숙(2005b); 강정숙(2011); 김광열(2007); 김도형(2004); 김명기(2001); 김민영(1994); 김민영(1998a); 김민영(1998b); 김민영(1997); 김민영(2000); 김상규(2001); 김운색(1996); 남상구(2005); 이만열 외(2000); 정진성(1998); 채영국(2004a); 채영국(2004b); 최영호(2004); 표영수 외(2008); 표영수(2002).

2. 연구 방법

1) 구술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인단 전원이다. 원고인단의 인원은 80명이며⁵⁾, 이 중 1명은 성 이외에 다른 기재사항이 없어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총인원은 79명이다.

필자는 일본에서의 소송과정에서 재판정에 제출되었던 원고인 명단에 기재된 원고인의 주소 79곳 모두를 방문하였다. 이 중 34명은 이사, 지번말소, 오기재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생존이 확인된 소송참여자 총 14명이며 실제 인터뷰가 가능한 이는 7명이었다. 이는 지병과 노환으로 인터뷰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현 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한 이들이 많고,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술조사 이외에 재판자료의 수집이 진행되었는바, 구술녹취록과 재판자료의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소송 참여 본인 혹은 가족으로부터 별도로 확보하였다.

〈표 1〉 원고인단 목록 및 방문조사표

연번	성명	지역	방문 여부	생존 여부	동의 여부	동의자	비고
1	박○○	여수	○	X	X	X	자손들 이사
2	문○○	광주	○	?	X	X	집 허물어짐/텃밭
3	전승렬	전주	○	○	○	본인	
4	차○○	구례	○	?	X	X	주소 오류/집을 찾을 수 없음
5	김○○	목포	○	?	X	X	이사
6	김용규	영암	○	X	○	부인	
7	백○○	광주	○	?	X	X	신축빌라 건축
8	김달중	장성	○	○	○	본인	
9	김○○	구례	○	X	X	X	가족들 타지 이사
10	왕영순	광주	○	X	○	아들	
11	양인식	구례	○	○	○	본인	
12	박○○	광주	○	?	?	?	2차방문 부재중/연락처 메모 남김

5) 표1)에서 연번은 82번 까지 있으나, 23번과 44번은 비어 있다.

연번	성명	지역	방문 여부	생존 여부	동의 여부	동의자	비고
13	양○○	광주	○	?	X	X	이사
14	신순례	남원	○	X	○	아들	
15	김○○	전주	○	?	X	X	상가 들어섬
16	박씨	영등	X	?	X	X	성만 있고, 이름이 없음
17	조정배	영등	○	○	○	본인	
18	손은규	영등	○	X	○	부인	
19	고○○	영등	○	?	X	X	주소 오류
20	권순애	영등	○	○	○	남편	
21	박순악	영등	○	○	○	본인	
22	박옥자	영등	○	X	○	며느리	
23	-	-	-	-	-		명단에 23번 없음
24	한세열	영등	○	X	○	아들	
25	라○○	보은	○	?	X	X	주소오류.발있음.주민-원래 집없다고.
26	이미용	보은	○	X	○	조카	
27	송○○	상주	○	?	X	X	집터만 남음. 아저씨 사망, 부인은 미국에 감.
28	김○○	대전	○	?	X	X	폐가
29	오병춘	공주	○	X	○	부인	
30	신○○	대전	○	?	X	X	주소오류. 주민센터에서도 모름.
31	김남체	영암	○	○	○	본인	
32	전○○	구미	○	?	X	X	신축 다세대 주택
33	이○○	장흥	○	?	X	X	바닷가 집터만 남음
34	위성연	광주	○	○	○	본인	
35	조○○	광주	○	?	X	X	폐가
36	장영도	광주	○	○	○	본인	우키시마 생존자/사건 당시 13세
37	김수곤	구례	○	X	○	아들	아들과 전화통화/우편발송해주시로함
38	김동천	영등	○	X	○	부인	
39	김태석	추풍령	○	X	○	부인	
40	이기출	영등	○	X	○	며느리	

연번	성명	지역	방문 여부	생존 여부	동의 여부	동의자	비고
41	천○○	대전	○	?	X	X	신축 상가건물
42	이○○	영동	○	?	X	X	주소오류. 추정지역은 포도밭.
43	이춘원	보은	○	X	○	손자	
44	-	-	-	-	-	-	명단에 44번 없음
45	지윤식	추풍령	○	X	○	부인	
46	서○○	보은	○	?	X	X	주소오류. 추정지역의 마을 없어짐.
47	김○○	추풍령	○	○	X	X	서울 딸집에 기거
48	정○○	서울	○	?	X	X	신축 주상복합 건물
49	박○○	부산	○	?	X	X	신축 상가건물
50	조○○	추풍령	○	X	X	X	가족들 이사
51	서○○	서울	○	?	X	X	8년전 이사
52	정관영	천안	○	○	○	본인	
53	안○○	진안	○	?	X	X	주소 오류
54	김○○	진안	○	X	X	X	가족들 이사
55	박○○	진안	○	X	X	X	가족들 이사
56	고○○	진안	○	?	X	X	주소 오류
57	박○○	성남	○	?	X	X	신축 기업체 건물
58	노○○	전주	○	?	X	X	부재중/거주자 성씨임/이사한게 분명
59	조○○	영광	○	?	X	X	주소 오류/인근 주민들 모른다함.
60	임순택	남원	○	○	○	본인	
61	손○○	진안	○	X	X	X	가족들 서울로 이사
62	문○○	서울	○	?	X	X	신축 상가 건물
63	김용원	구례	○	X	○	며느리	
64	강○○	구례	○	?	X	X	이사
65	박○○	영암	○	X	X	X	가족들 이사
66	김유성	장흥	○	X	○	아들	
67	이○○	김제	○	X	X	X	가족들 이사
68	이○○	진안	○	?	X	X	주소 오류

연번	성명	지역	방문 여부	생존 여부	동의 여부	동의자	비고
69	김○○	진안	○	X	X	X	가족들 이사/71번과 형제
70	손동배	진안	○	X	○	손자	
71	김○○	진안	○	X	X	X	가족들 이사/69번과 형제
72	안○○	진안	○	X	X	X	가족들 이사
73	최두봉	진안	○	○	○	아들	병환으로 입원 중
74	김○○	진안	○	?	X	X	주소오류
75	박○○	진안	○	?	X	X	외진마을. 집4채 중 한 채는 폐가. 모든 집 부재중. 주변에 인적 없음.
76	박용현	영암	○	X	○	부인	
77	이○○	의왕	○	?	X	X	2차방문 부재. 현 거주자 오씨임.
78	손○○	영동	○	?	X	X	이사
79	손○○	영동	○	?	X	X	주소 오류
80	송정현	진안	○	○	○	본인	
81	도○○	진안	○	X	X	X	가족들 이사
82	김○○	진안	○	X	X	X	가족들 이사

구술조사는 2014년 6월~12월에 진행되었고, 면담은 소송참여자의 자택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구술조사 참여자의 개략적인 신상과 구술장소는 다음과 같다.

〈전승렬〉 전주시 거주. 우키시마호 탑승 사망자의 아들.

구술일자: 2014년 6월 9-10일, 구술장소: 전주시 서신동 투썸플레이스

〈장영도〉 광주시 거주. 우키시마호 탑승 생존자.

구술일자: 2014년 11월 22-23일, 구술장소: 광주시 자택

〈위성연〉 광주시 거주. 우키시마호 탑승 생존자의 아들.

구술일자: 2014년 11월 22일, 구술장소: 광주시 자택

〈이용림〉 영동군 거주. 우키시마호 탑승 생존자의 부인.

구술일자: 2014년 10월 29일, 구술장소: 충북 영동군 자택

〈권순애/육근화〉 영동군 거주. 우키시마호 탑승 사망자의 딸/사위.

구술일자: 2014년 10월 29일, 구술장소: 충북 영동군 자택

〈양인식〉 구례군 거주. 우키시마호 탑승 사망자의 동생.

구술일자: 2014년 11월 8일, 구술장소: 전남 구례군 자택
<조정배> 영동군 거주. 우키시마호 탑승 사망자의 조카.

구술일자: 2014년 10월 28일, 구술장소: 충북 영동군 자택

2) 조사 내용

준비과정에서 작성한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구술자 인적 배경:

출생하신 장소와 연도는?

현재 가족은 모두 몇 분이며, 성명과 출생연도, 나이, 직업은?

최종 재학하신 학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셨는지?

종교는?

결혼은 하셨는지?

지금 사시는 곳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웃 사람들과 교류는 자주 하시는지?

2.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질문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언제 일본에 가셨는지?

일본에 가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경로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었는지?

3. 우키시마호 재판 관련

재판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공판에 참여한 회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인상 깊었던 이야기나 사건은?

재판 참여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재판 관련 자료나 사진을 가지고 계시는지?

4. 피해 대책에 대한 의견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피해 관련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피해 관련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실제 구술조사 과정에서는 구술자가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구체적인 경험에 차이가 있고, 주요한 기억들을 우선적으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술조사의 주요 맥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면담자가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구술시간은 조사대상자의 기억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전승렬과 장영도는 소송이 진행되었던 1992년~2004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증언내용도 다른 이들에 비해 방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술조사는 각각 이들에 걸쳐 이루어졌다. 나머지 5인의 구술조사시간은 2~3시간 정도이다.

II. 소송 참여와 재판 과정

1. 소송에의 참여: 생활상과 참여계기

1) 생활상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 80명 중 전라도 지역 거주자는 원고인단의 과반수를 넘는 47명이다. 이 밖에 충청권 거주자가 26명이었고, 기타 지역은 7명이었다. 원고인단의 상당수인 64명이 시골 지역 거주자이며, 도시 거주자는 26명에 불과하였다. 전라도에서는 진안 출신이, 충청도에서는 영동 출신이 가장 많다. 눈여겨볼 점은 시골 지역 거주자들의 대다수는 총가구수가 수십 가구 이내의 촌락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모두 소규모 농업인들이었으며, 평생을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왔다. 또한 몇몇은 한글조차 터득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수준이 낮았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40건 정도의 소송이 일본 법정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 소송들 중에서 우키시마호 사건은 원고인단의 구성에 있어 다른 사건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원고인의 절대다수가 사건 피해 사망자의 유족들이라는 점에 있다. 원고인 80명 중 탑승생존자는 20명이다. 그리고 필자의 직접방문을 통해 원고인단 중 생존여부가 확인된 사람은 총 45명인데, 이들 중 우키시마호 탑승 생존자는 단 3명이었다. 즉 45명 중 42명이 유족이다. 탑승 생존자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으며, 1명은 병환으로 입원 중이었다. 그나마 탑승 생존자로서 필자가 면담했던 광주거주 장영도는 사건 당시 13세였다.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대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필자가 방문하여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원고인으로 참여한 이들의 미망인들은 대부분 독거상태였다. 유족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의 수령 가능성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테면 탑승 생존자이자 원고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김태석(2007년 사망)의 미망인 이용림은 '옆 마을 강제동원 피해자 미망인은 매달 8만원씩 받는 다던데 자신은 한 폰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하소연하였다. 우키시마호 사건 사망피해자의 딸이자 소송 원고인이었던 권순애는 강제동원피해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조차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권순애 출생 후 일본으로 끌려간 아버지는 우키시마호 탑승 사망자이다. 해방 후 그의 어머니는 개가하였는데, 새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면서 사망자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이라 할 수 있는 원고인들로는 장영도와 전승렬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장영도는 정규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교장과 교육원 원장을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여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전승렬은 30세에 농협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매우 힘든 어린 생활을 보냈다고 회고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두 살 때인 1944년 강제동원되어 1945년 우키시마호 침몰로 사망하였다. 그의 아버지 전수암은 전주에서 큰 규모의 양조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강제동원된 이후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공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이후 할머니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친척들의 도움도 없었던 그는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한 후, 남의집살이와 인력꾼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30세에 농협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2) 소송참여 계기

대다수의 원고인들은 일본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소송에 참여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일본 정부의 공식진사와 배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영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스즈메루카이(축진회·일본에 대해 진사와 배상을 촉구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회)의 줄인 말: 필자주)하고 이금주씨가 합의를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나중에 보상 나온다고 하니깐 한 사람, 한 사람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51명이었다가 나중에 20몇 명 났다가도 80몇 명이 원고가 돼서 소송하게 된 거지.

필자가 방문하여 만났던 원고인 혹은 그 유족들은 31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술조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소송의 원고인들이 이리저리한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비 혹은 기타 경비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소송의 최종심이 있는 뒤 10여년이 지난 2014년에 이루어진 면담 과정에서 이들의 관심사는 일본국의 배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정부 민원실 담당하는..... 아무 해당이 없다 이거야 나는.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당이 없다 이거야. 그럼 이제 유골이라도 모셔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정부에서. 근데 뭐 거기서는 보상 뭐 이런 걸로 따지지 신경 안 써주시더라고.

이들 대부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⁶⁾’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된 자로서 행방불명되었거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혹은 유족에게 위로금 최대 2천만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족은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미혼이었다는 사실이다. 선행법이었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입법되고, 2008년부터 시행해 들어갔음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혹은 귀환 도중 사망자 대부분의 유족들은 위로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는 사망자들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없고, 부모·배우자·형제자매는 대부분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원고 조정배의 경우 작은아버지가 우키시마호 탑승 사망자였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었고, 작은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없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권순애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위의 언급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원고인들과 그 유족들은 한국 정부의 위로금을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 일본국이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지급해야 하는 ‘배상’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해외동원 피해에

6) 이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2007년 12월 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고,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정부 대신 한국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정도의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에서의 소송에 참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고,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수였다. 전승렬과 장영도 두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였고, 특히 전승렬의 경우는 40여 차례의 공판에 거의 다 참석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되고, 승소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본 정부의 배상 가능성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참석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장영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에 가서 공판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처음에 소송할 때 십여 명 갔나? 그 뒤로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재판 열 때마다 원고 측에서 한 사람도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마지못해 가고. 오래 되니깐 누가 가려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위해 재판에 참여했어. 쉽게 이야기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야. 그때부터는 재판을 하기는 하는데 원고 자신들이 방관하는 상태가 된 거야. 방관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했던 사람이 전주에 있는 전승렬 씨, 나, 몇 사람 안 돼요.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소송준비과정에서 소송의 개시와 원고인단 모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송두회였다⁷⁾. 송두회는 1920년 경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간 후, 만주 등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1973년 그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자신이 일본인임을 확인하는 국적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974년부터는 사할린 조선인의 귀국을 요청하는 소송을 주도하였다. 1989년부터는 강제동원 군인·군속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990년 대 초반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소송’, ‘광주 천인 소송’, ‘BC급 전범 소송’ 등을 주도하였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승렬, 장영도 등은 송두회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장영도는 그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7)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b, 84-87).

교토를 중심으로 ‘우키시마 마루의 진상, 침몰 진상 규명 및 보상을 추구하는 모임’, 일본 사람들은 그 모임을 갖다가 스즈메루카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촉진회라고 하는 하나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모임을 가졌어. 그 모임에서 우키시마 마루 사건을 취급하게 된 거야. 교토에서 우키시마 마루가 침몰한 원인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일본 정부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스즈메루카이 회장이 송두희씨야. …… 송두희씨가 이렇게 억울한 우키시마 마루 사건이 있지 않냐, 자기는 관계는 없지만, 아, 이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스즈메루카이 일본 회원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경비를 대준다, 이렇게 된 거야.

송두회를 중심으로 일본인 민간활동가 아오야기와 변호사 야마모토가 우키시마 소송을 주도하였다. 전승렬에 증언에 따르면 아오야기는 가정주부로 의사부인이며, 소송 준비와 소송 자금의 조달 등의 지원을 하였다. 한편, 야마모토 변호사는 송두회의 지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으며, 십여 명의 변호사들을 모아서 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즉,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 진행의 핵심에는 송두회가 있으며, 아오야기와 야마모토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변론은 무료로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에서의 경우, 소송의 개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유족회)’ 광주지부장 이금주였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이금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키시마호 소송과정에서 원고인들이 유족회에 가입하고 단체의 지원을 받은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구술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자면 이금주는 유족회의 지부장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우키시마호 소송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 전승렬에 따르면 이금주의 남편이 일제강점기에 군노무자로 끌려가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가 광주에서 단체를 조직하고 일본에 가



〈그림 3〉 우키시마 소송 원고인단의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전승렬)

서 송두회를 만나면서 우키시마호 소송이 시작될 수 있었다. 장영도 역시 같은 정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장영도는 소송 전에 이미 이금주와 접촉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금주는 일본에 갔다가 우연찮게 송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회장으로 있던 스즈메루카이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우키시마호 소송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소송원고인들 중 과반수가 전남광주 출신인 것은 이금주의 활동 근거지가 광주였기 때문이다. 한편, 충청권에서 특히 충북 영동군에서 원고인들이 많은 이유는 영동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조정배는 영동신문의 ‘박기자’가 소송의 계기라고 이야기한다. 이후 모임이 만들어지고 영동지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모금을 하고, 소송비용, 숙소비용 등을 마련했다고 한다. 육근화 역시 영동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지역 모임이 꾸려졌다고 말하고 있다. 영동신문이 이후 지속적으로 소송의 진행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이는 없다. 다만 이 지역에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소송 관련 소식도 듣고, 참여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웅림의 남편이 죽기 전에 어떤 모임의 회장이었다고 하는데, 모임의 정확한 명칭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지역 원고인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인들은 회의차 광주에 자주 갔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충청지역의 모임들이 이금주와 연결되면서 일본에서의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단체/기관의 협조

1) 민간단체의 지원

우키시마호 소송 원고인들은 우키시마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민간단체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광주지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단체를 소송과 직접 결부시키는 진술은 없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족회의 광주지부장인 이금주가 개인자격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승렬은 한국 민간단체의 지원과 관련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민간단체는 그 당시 어떤 협력관계라기보다는 민간단체는 사이버 민간단체가 많았습니다. 그저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자기네들이 생활하고 이런

그 사이비 단체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인정을 안했어요. 한국에서 단체라고 하면은 인정을 안했어요.

우키시마호 소송과 관련된 협조와 지원은 전부 일본인들의 민간단체로부터 온 것이었다.⁸⁾ 구술자들은 일본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매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승렬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 시민 단체도 좋은 사람들 좋습니다. 아주 전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고,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좋은 양심적인 사람들 있어요.

이러한 인식은 전승렬 뿐만 아니라 장영도, 위성연 등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40여 차례 방문했던 전승렬은 개인적으로 경비 지출이 많았는데, 아오야기, 송두희가 가끔씩 항공비를 제공하였으며, 숙박문제를 해결해주었다고 진술한다. 장영도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스즈메루카이 쪽에서 비행기 경비를 도와주었고, 호텔은 아니지만 교토에 여관을 숙소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아오야기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몇 백만 엔을 내주었으며, 아오모리현의 민간단체인 시모키타회에서 추도식 참석을 위해 항공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2) 언론의 관심

원고인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가 일본 언론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상과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영도는 우키시마 사건 관련 방송 프로그램 녹화 테이프를 다수 수집하였는데, 한국 방송사의 경우 1996년의 KBS 일요스페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광주 MBC의 특집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았다. 1977년

8)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일본의 민간단체는 지역별로 존재한다. 우키시마호가 침몰하였던 마이즈루의 '우키시마호 순난자 추모위원회', 우키시마호가 출항지였던 아오모리현 시모키타군의 '시모키타회', 교토의 '일본에 대해 진사와 배상을 촉구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회'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나 증거자료집 작성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단체가 구성되기도 한다. 마이즈루와 아오모리현의 단체들은 매년 우키시마호 침몰일(8월 24일)에 각각 별도로 추도식을 개최하고 있다.

일본 NHK의 우키시마 탑승 선원 증언을 비롯하여, 1992년 이후 교토 TV, 교토 NHK, 요미우리 TV 등은 여러 차례 우키시마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고, 이들 중에는 시리즈로 방영된 것도 있었다.

우키시마침몰 사건에 대한 한국과 일본 방송 간의 관심의 차이는 방영물의 개수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우키시마소송 과정에 대해서 일본 언론사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여준 반면, 한국 언론사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승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거기를 가면은 뭐 NHK나 여러 가지 3개 방송사들에서 나오고 신문사들에서 나오고. 재판정에 들어간다 하면 문 앞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대기해 가지고. 허나 우리 정부에서는 KBS나 MBC나 기자들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십년동안 다니면서 인터뷰는 KBS와 딱 한 번 했지. 그 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림 4〉일본 재판소에 들어가기 전 가두행진을 하는 원고인단
(사진제공: 전승렬)

장영도 역시 원고단이 일본에서 행사나 공판 참석을 할 때마다 일본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했던 반면, 한국 기사는 딱 한번 인터뷰했을 뿐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1심 판결이 있는 직후, KBS로부터 전화로 이루어졌다. 방송사의 의도는 1심 판결의

일부 승소(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관련 피해자 15명에게 30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의 긍정적인 의미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영도는 일부 승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KBS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1심 판결 후) 우리 신문사 입장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지. KBS에서 생방송 나간다고 막 전화가 와. 판결 소감에 대해 물어 봐.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는 일부 승소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거 이거다, 유족 입장에서는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뭐라 하더라도 딱 끊어버려.

소송참여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론의 무관심은 단지 소송진행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한결같이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극히 일회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승렬〉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해방 기념일로 해서 8월 15일 그 때만 잠깐 몇 마디가 나왔다가 또 사라져 버리고,……

〈장영도〉 8월 15일쯤 되면은 뭐 잡지사에서,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하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어찌구 하고 그러는데 일체 전부 다 사양해 버렸어요.

우키시마호 사건 및 그 소송과정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강제동원 피해 더 나아가서는 일제잔재청산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피해 사례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후속처리를 위하여 학계, 언론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 한국 정부의 지원

소송에 적극 참여했던 전승렬과 장영도는 한목소리로 소송과정에서 한국의 민간단체나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정부가 그들의 소송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영도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이제 내 혼자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은 결국 정부에서 안 알아주고 뭐 수확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체 내가 손을 떼다. 그랬어요.

전승렬도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한국정부는 도움이 안 돼요. 건의해 봐야 도움이 안 돼요. 이만큼도 안 돼요. 그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를 갖다 불신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그래서 안 되겠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피해자들에게 후원이 라도 해주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좀 이로운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

이와 함께 그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월고인들도 보다 강력하게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장영도는 정부기관(국회, 외무부, 국가보훈처, 정부합동민원실 등)에 제출했던 각종 탄원서, 청원서, 진정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 서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Ⅲ. 판결에 대한 인식

1. 폭침설에 대한 입장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은 폭발이다. 그러나 무엇에 의한 폭발인가에 대해서는 폭침설과 축퇴설로 생존자들과 일본정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폭침설은 일본 해군이 고의적으로 우키시마호를 폭파하여 침몰시켰다는 입장이며, 축퇴설은 우키시마호가 마이즈루항에 입항 도중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닿아 폭발하여 침몰했다는 입장이다. 소송과정에서 일본 재판부는 축퇴설을 기본 전제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존에 발간된 자료⁹⁾에 따르면,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우키시마호 해군 승무원들이 고의로 배를 폭파하여,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을 수장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항해 도중에 배안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이야기를

9) 사이토 사쿠지(1996); 전재진(2008) 등.

들었다. ② 일본 해군병사가 조선인에게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③ 해군 병사들이 짐을 바다에 내다 버렸다. ④ 마이즈루항 입항 당시 기뢰해소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있었다(해군병사 증언). ⑤ 폭발 당시 물기둥이 없었다. ⑥ 기뢰폭발이라면 더 빨리 침몰되었어야 한다. ⑦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⑧ 폭발 직전 선장을 포함한 장교들이 보트를 타고 탈출하였다. ⑨ 우키시마호 입항 전에 두 척의 배가 안전하게 진입하였다. ⑩ 우키시마호 2차 인양시 사진에서 선체가 밖으로 휘어졌다.¹⁰⁾ ⑪ 폭발시 배의 중앙부가 ㄸ자 형태로 들어 올려 졌다가 V자 모양으로 곤두박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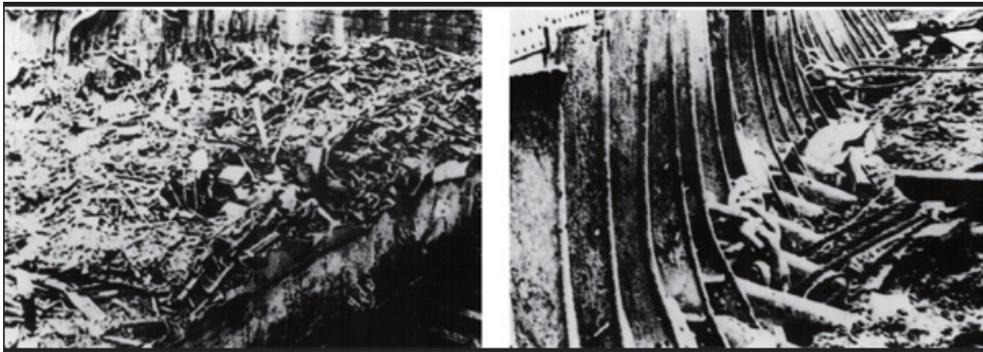
일본 재판부는 폭침설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군이 6월 30일 부터 8월 8일까지 100개 이상의 기뢰를 투하하였고, 기뢰의 종류가 다양하여 감응 조건이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패전 이후 11월 3일까지 마이즈루만에서 9건의 축뢰사고가 발생하여, 5척의 선박이 침몰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일본 재판부는 축뢰설 역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축뢰설이든 폭침설이든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므로, 일단 축뢰설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¹¹⁾

필자가 면담한 소송 원고 전원은 우키시마호는 고의로 폭침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전승렬은 증인들의 말과 당시 배가 폭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폭침시켰다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한다.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폭침설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데 있다. 다만 필자의 생각에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히기 위해 향후 조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54년 2차 인양당시 찍은 선체 사진에 대한 분석, ② 1945년 8월에 투하된 기뢰의 종류와 투하 위치 파악, ③ 배가 침몰되던 당시 마이즈루만 근처의 조류 흐름 분석, ④ 현재 마이즈루만에 남아있는 선체 일부의 인양.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개인이 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정부기관이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선체 인양은 고철회수를 목적으로 1950년 3월, 1954년 1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양과정에서 유골이 함께 인양되었다. 선체의 일부는 인양되지 않고, 여전히 마이즈루만에 가라앉아 있다. 인양당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기자 한 명이 몰래 촬영하여 신문에 게재하였다.

1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b, 133-134).



〈그림 5〉 2차 인양 당시 1954년 10월 9일자 『국제신문』에 게재된 사진

필자가 면담한 소송 원고인들 중 일부는 우키시마 탑승 생존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려준 폭침관련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진술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고려하여 녹취록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장영도의 경험과 부친의 이야기〉

화물선은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통 텅 비잖아. 도중 도중에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까지 다 뚫려있고. 그리고 요쪽에 난간이라고 그런가? 난간 있고, 그 위에 또 난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뒤쪽은 선실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군인들이 침식했던 선실이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위에는 갑판으로 되어있었고, 배에 탈 때는 부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는 선저에 태우고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배 위에 태웠어. 우리 가족도. 나는 13살이니깐 어머니랑 같이 탄 거야. 선저, 배 밑에. 아버지랑 형은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선, 앞에 쪽 텅 비어있는 곳, 층층에 난간이 있었다고 했죠? 이런 곳에 탄 거야. 배에 타고 오면서도 가족이 떨어진 거지.

배가 침몰하는 그 날, 오후 한 5시 쯤 됐지. 45년 8월 24일 오후 5시 쯤 됐을 때, 육지가 가까이 보인다고. 오는 동안 육지가 보인다고는 해도 까마득하게 보였어. 가까이 보인다면 이틀 이상 배를 타고 왔으니깐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하고 있다가 갑판에 올라와서 육지를 보려고 올라간 거야. 올라가려니깐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올라가지 마라 했거든, 그게 마지막이야. 배에서 죽은 동생이 내가 올라 가려니깐 따라오려고 했어. 근데 내가 안 데리고 나간거야. 넌 여기 있으라고. 혼자 올라갔다고. 올라가서 육지를 구경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갑판 맨 위에서.

그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가다가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 그 앞바다에서 배가 가다가 서는

거야. 그니깐 우리는 이상하잖아. 왜 여기가 항구도 아닌데 서는 고. 가다 딱 서. 우연히 배 앞을 봤다고, 배 앞을 보니깐 구명보트가 딱 내려진 거야. 굉장히 높잖아. 아파트 10층 정도 돼요. 주욱 내려오드만은. 먼 데서 보이는 거야. 군인들이 먼저 타. 그 배가 모션을 출발하자 난데없이 빵 소리나면서 사람이 내가 앉았던 데가 딱 올라왔다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몇 번 빠방한 거야. 순식간에 배가 딱 부러져 버린 거야. 순식간에.

그 때는 몰랐지. 왜 배가 거기에 섰나. 첫 번째. 그걸 본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 근데 본 사람이 몇이 있었어. 왜 누가 배를 타고 갔느냐. 세 번째, 만약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뢰에 의해서 폭발했다면 외부충격에서 폭발했잖아. 앉아있던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그래 될 거 아니야, 근데 위에 뒀다가 떨어졌다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안에서 폭발한 것이다. 얘기하다가 빛나갔지만 아버지가 배에 타자마자 아버지는 배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뭐 지도자는 아니었고. 백 명 이상 인부를 데리고 있었던 오야가다니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줬어. 역시 일본 해군 측에서도 알아줬어. 왜냐하면 일본 해군에서도 인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징용 노동자들보다 자유 노동자들이 승률이 있고, 그래서 일본 해군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사람이었다고. 배에 타자마자 누가 같이 탔냐하면 미나니 텐베고조라고 그러니깐 남씨라고 하는 헌병 오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계급으로 하면 상사급에 들어가는 군인이야. 오미나토 해군 사령부에는 헌병대가 없었어. 그 때. 육군 헌병대가 파견되어 있었어. 육군 헌병대에 파견되어 있던 헌병대의 한 사람이었어.

한국 사람이지. 옛날부터 아버지하고 친했어. 근데 배를 태웠을 때, 이 사람도 조선 사람이니깐 일본 무조건 항복했으니깐 필요 없다 그래서 같이 태운거야, 같이 탄 거야. 같이 탔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야, 나는 그 때는 몰랐지. 이 헌병 오장이 정보를 준거야. 아버지한테. 이 배가 부산으로 바로 가면 다행이지만 부산으로 바로 안가고 도중에 어디에 기항을 하면 제대로 살아남기 힘들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야. 다음에 또 모르긴 몰라도 이 배에 폭발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그 사람도 정확히 몰라, 되어있는 지도 모른다.

〈위성연의 부친이 들려준 이야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폭침이냐 뭐냐 이진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분명히 시한폭탄이라고 그랬어.

우리 아버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폭침 30분 전에 소위 말해서 징용자 간부급들을 소집을 해요. 부장급 이상이 되는... 소집을 했는데 그 소집에서 그 그러니까 그 일본놈들

모르게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중에 도끼랄지, 칼이랄지, 가위랄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요. 근데 승선과정에서 모든 짐들을 수화물 칸에 다 실어요. 심지어 검사까지 해요. 승선할 때. 그러면서 그런 물건들을 전부다 회수해서 가방 속에 다 넣었어요. 열쇠까지 채워버려요. 그래서 뜯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승선하는 과정에서 다 없었지 않냐. 다 가져갔지 않냐.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이죠? 최우두머리급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절대 선실에 가서 동료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 여러분 같이 다 죽는다. 이 배는 30분에 폭발된다. 30분 후에 폭발된다. 스크류 밑에 시한폭탄이 있는데 도화선이 거기로 지나간다. 내가 그걸 자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구가 있는가를 내가 당신들 소집해서 부른거다. 절대 선상으로 돌아가서도 비밀을 발설하지 말 것이며, 어 여러분 선상 안돌아가 가도 좋다. 배가 이따가. 배가 침몰되는 순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위로 가는 게 좋을 거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

저기 최고 우두머리급. 그 분은 일본. 우키시마호 선장의 탈출용 배, 보트 있잖아요. 구명정이 있잖아요. 그 배를 미리 탈취해가지고 그분은 도망가요. 죽을 걸 알고.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은 감춰져 있더라구요. 안타까워요. 저희 아버지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8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2. 1심 부분승소에 대한 인식

1992년 8월 25일에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개시된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의 1심 판결은 2001년 8월 23일에 내려졌다. 소송의 쟁점은 모두 네 가지였다. 1)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와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 2)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 3) 입법부작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 4) 유족들의 유골반환 청구.

이 네 가지 사안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안전배려의무위반’ 1건이었고, 나머지 3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국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 1인당 300만 엔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원고인들 중 우키시마호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15인에게만 해당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생존자로서 원고인단에 참여한 20명 중 5명은 탑승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인단 중 60명은 유족으로서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이다. 한편, 최종심에서는 ‘우키시마호의 함장 등에게 통상적인 항해상의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안전배려의무위반’과 관련된 원고측 주장마저도 기각되었다.¹²⁾

원고단이 피고인 일본국에 요구한 공식사과와 배상은 기각되었으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서 일본국의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국의 책임을 일부나마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장영도의 견해이다.

일부 승소와 관련하여 장영도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우리 유족 입장에서 재판 목적에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성취하지 못한 거야. 배상할 거면 다 해야지. 열 몇 명만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판에 참여했던 80 몇 명은 다 해줘야 할 거 아냐.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고 입장에서는 승소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신문사 입장에서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일부나마 시인했다는 점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지. 그 보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불만이 많지.

탑승생존자이자 사망자의 유족이기도 한 장영도에게 소송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1) 우키시마호 폭침의 규명, 2) 우키시마호 폭침에 대한 사과, 3) 우키시마호 침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4) 사망자의 유해 소환. 유족으로서 장영도가 제시한 소송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소송 쟁점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인 변호사들은 법리를 따져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에, 원고인으로 참여한 유족들에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3. 유골반환

소송과정에서 원고인단이 피고 일본국에게 요구한 내용 중 하나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유골의

李	木	木	金	金	芝	松	大	朴	李	山	氏
壽	村	田	山	山	山	村	福	関	萬	本	浮
得	莫	天	章	乙	埜	充	男	用	述	旭	島
	石	章	煥	變	浩	洙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者
											名
											簿
											地
											浮
											島
											丸
											遣
											難



〈그림 7〉 부친의 성함이 기재된 유골함을 들고 있는
전승렬(사진제공: 전승렬)

지 않고, 한꺼번에 매장되었다. 후에 혼골되어 있던 뼈조각들을 함에 넣어서 사물자 명부에 맞춰서 이름표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이 유골들이 유텐지까지 오게 된 경위도 분명치 않다. 즉, 이 유골함에 있는 뼈조각이 희생자의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인의 유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장영도는 일본정부에서 부산 영원으로 어머니 유골을 봉환¹⁴⁾한 바 있는데, 유텐지에도 또 어머니가 계신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우키시마호 선체 인양 당시 발견된 시체들을 한꺼번에 화장했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알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환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대한 판결문의 요지는 일본국은 유텐지(宇天寺)에 위탁하였으며, 유골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일본국은 유골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골반환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유족은 자유롭게 유골을 봉환할 수 있다. 그러나 유골 반환과 함께 일본국으로부터의 사과나 배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의 입장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 유골을 모셔갈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유텐지에 모셔진 유골함에 있는 유골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유텐지에는 우키시마호사건 희생자 280위의 유골이 있다.¹³⁾ 그런데 우키시마호 침몰 직후 희생자 시신은 한 구씩 별도로 수습되

13) 유텐지에는 1천위가 넘는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이 있으며, 일부는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2007년 봉환된 바 있다.

14)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유골을 반환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부산 영락공원묘역에 안장되었다.

전승렬 역시 같은 맥락의 진술을 한다.

배가 폭침이 되가지고 일본애들도 죽고 여러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그서. 죽었는데, 그 죽은 분들을 개인별 개인으로 해서 전부다 화장을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 그게 해군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도 확인을 했고 가서 죽은 그 사람들을 전부 해군 본부로 다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거그서 불을 질러서 화장을 시켜가지고 거그서 섞여진 뼈를 갖다가 조금씩 한 주먹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안을 해서 모신거예요 거그서. 동정에 우천사에다가 그렇게 모신거예요. 그럼 누구 뼈 인지도 몰라요.

전승렬 씨는 유테지에 방문하여 일본 후생성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함을 열고 유골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함에 들어 있는 것이 돌이 아니고 뼈인 것은 맞으나, 그는 부친의 유해 봉안을 거부하였다. 누구의 뼈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정부에 유골의 DNA 검사를 하여 부친이 맞으면 봉환하겠다는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한다.

유테지에 모셔진 우키시마호 탑승 사망자의 유골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유골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희생자 유족들을 초대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내용으로 하는 추모식을 일본 현지에서 개최하고 유골봉환 비용,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이 난망해 보인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4. 최종심 패소판결과 한일 협정

2004년 11월 30일 도쿄 최고재판소는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의 최종심을 통해 원고인단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구술조사에 참여한 원고인들은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을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일협정문제는 1심에서는 그리 중요한 법리가 아니었다.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 즉 한일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판결의 중요한 요지의 하나였다.

구술참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시점은 해방 후 이므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승렬〉 최종 결정이 모든 것은 65년도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 한국 정부에 항의해라, 보상을 받으려면 한국 정부에 보상을 받아라. (그런데) 한일협정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8월 15일 이후 8월 24일 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65년도 한일 협정에도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거죠. 확실하게 안 들어간 거죠.

〈위성연〉 1965년도 한일협정 맺을 때 다 해결했다. 지금 의견은 그건데. 우리는 해방이후 사건이지 않냐. 별도로 다뤄져야한다. 우리주장은 그겁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다른 사례들과 달리 우키시마호 사건은 일제 패망후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보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협정과 관련된 한일간 이견과 협정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학계와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시 시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청구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중적 해석에 있다.¹⁵⁾ 우키시마 사건 소송의 원고인즉 변론을 담당했던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재판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에 의해 포기한 것은 일체의 청구권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법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소간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미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은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법원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이중적인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우키시마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우키시마호 사건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강제동원 피해와 결부되어 있다. 일본정부가 수미일관하게 한일협정을 거론하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 법정과 일본 정부의 논리가 이중잣대이며 자가당착임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논리를 한국학계와 정부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b, 66-72).

IV. 결론

일본 법정에서 12년 동안 지속된 우키시마사건 소송은 결국 패소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과 원고인단, 그리고 일본 민간단체와 일본 언론들은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자료들도 대거 발굴하였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죄를 받지 못했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거부당하였다.

소송에 참여하였던 원고인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형제의 한을 풀지 못했다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어떻게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매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키시마호 사건 침몰 사망자 명부가 존재하지만, 이 사망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어야 할 승선자 명부는 찾을 길이 없다. 사망자 명부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사망자수는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524명보다는 많을 것임은 분명하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 해도 오백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침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사건 관련 자료 발굴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협조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50년과 1954년에 이루어진 우키시마호 선체 인양작업 당시 사진 촬영을 금지함으로써 사건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기각한 일본 재판부의 최종판결에 대해 원고인들이 보이는 분노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의 당사자였던 원고인들은 소송 과정이 외로웠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한국 사회와 언론, 특히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송이 진행된 때문이다. 일본 민간단체가 소송의 준비와 시작을 주도하였으며,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은 일본 민간인들의 기부로 충당하였고, 변론도 일본인 변호사들이 주도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계와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에서의 소송은 패소로 끝났으나, 아직까지 우키시마 침몰 사건이 남겨놓은 의문점들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1)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및 군인군속 관련 각종 명부의 데이터베이스화

1971년, 1991년, 1992년, 1993년, 2009년 등 일본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약 48만 명 분량의 조선인 노무자 및 군인군속 관련 각종 명부를 인도하였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이 명부들은 아직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명부들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성명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며, 유족에게만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노무자, 군속, 위안부 등 각종 형태로 일본, 중국, 만주, 사할린, 동남아, 남양군도 등에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이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48만 명에 해당하는 이 자료들은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일제의 강제동원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상 및 피해 내용 파악, 공탁금과 미지급 급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이다.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반면, 이 명부들의 분석은 강제동원과 관련된 다양한 거시적 지표들을 제시할 수 있는 등 강제동원사 연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사례 발굴 및 지원 체계 마련

피해자 및 피해사례 발굴 작업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강제동원피해접수는 피해자나 유족의 신고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신고를 통한 피해자 조사는 한계가 많다.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 자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부모형제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피해 신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또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피해사실 증명 및 가족관계 증명 등의 번거로운 절차도 신고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언급한 명부들의 전산화는 피해사실과 피해자 규명 및 지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명부들 어디엔가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단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우키시마호에는 아오모리현 노무자와 군속자들의 대부분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근무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지 등을 참고로 피해 신고에 의해서 아니라 정부기구 직권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추가 자료 조사

추가적인 증거 자료 수집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필자가 속해있는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는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우키시마호가 오미나토를 출항한 이후 마이즈루에 이르기까지 무선통신 내용을 담고 있는 ‘연합군총사령부(GHQ)’ 문서와 마이즈루만의 기뢰 부설과 관련된 미공군전략폭격단 자료들을 발굴한 바 있다. GHQ자료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소가 발굴한 자료는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조사로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방위성방위연구실도서관, 외교사료관, 공문서관, 일본 국회도서관 등에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검증

민간단체가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주도의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 우키시마호의 설계도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략적인 탑승자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공군전략폭격단 자료를 추가로 입수하여 1945년 8월에 마이즈루만 근처에 매설된 지뢰의 종류를 판별하고, 침몰 당시 조류의 흐름을 분석하여 축퇴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1954년 「국제신문」에 실렸던 우키시마호 선체 인양 사진을 판독하면 보다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단행본〉

- 릿교대학 사학과. 1993. 『징용과 원폭 그래도 끝나지 않은...』. 서울: 기독교문사.
- 사이토 사쿠지. 1996.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진상』. 서울: 가람기획.
- 아사히 신문사. 1998. 『우토로사람들, 이웃사람』. 서울: 이웃사람.
- 여성부. 2002. 『2002년 국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 요시미 요시아키. 1998. 『일본군 군대위안부』. 서울: 소화.
- 우쓰미 아이코. 2007. 『(조선인 BC급 전범)해방되지 못한 영혼』. 서울: 동아시아.
-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2005. 『우토로-강제철거에 맞선 조선인마을』. 서울: 민중의 소리.
- 이토 다카시. 1997. 『종군위안부』. 서울: 풀빛.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5. 『당꼬라고요?』.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a. 『가긴 어딜가? 현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b. 『갑자을축생은 군인에 가야한다』. 서울: 일제강점하 강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c. 『검은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d. 『구일본군 해군설영대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e.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 했네』.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f. 『타이헤이마루사건 진상조사』.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a.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b. 『우키시마호사건 소송자료집1』. 서

- 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c. 『우키시마호사건 소송자료집2』.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a. 『굴 파러 군대 갔어!』.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b. 『남방기행 : 강제동원군속수기집』.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c. 『내몸에 새겨진 8월』.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d. 『일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이 아니다』. 서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e.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었구나』.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9.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 - 일본 훗카이도편』.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전재진. 2002. 『마그마』. 서울: 백산자료원.
 - 정혜경. 2011. 『지독한 이별- 1944년 에스토르』. 서울: 선인.
 - 정혜경. 2013a. 『봄날은 간다-방적공장 소녀 징용』. 서울: 선인.
 - 정혜경. 2013b.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서울: 선인.
 - 정혜경. 2013c. 『훗카이도 최초의 탄광 가야누마와 조선인 강제동원』. 서울: 선인.
 - 조지 힉스. 1995. 『위안부: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도즈카 에츠로. 2001.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서울: 소나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서울: 한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서울: 한울.
 - 한국정신대연구소. 2000.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 서울: 한겨레신문사.

〈논문〉

- 강정숙. 2002.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기업의 역할: 샷쿠(콘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60.
- 강정숙. 2003a. “제2차 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 강정숙. 2003b. “제2차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의 간호부 편입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20.
- 강정숙. 2005a.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 제도의 조선인 군 ‘위안부’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 강정숙. 2005b. “일제 말기 조선인 군속 동원-오키나와로의 연행자를 중심으로.” 『사람』 23.
- 강정숙. 2011.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조선인 명부를 통해 본 군 ‘위안부’ 동원.” 『지역과 역사』 28.
- 김광열. 2007. “강제동원자 한인 생사불명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전후처리.” 『한일관계사연구』 26.
- 김도형. 2004. “태평양전쟁기 하와의 포로수용소의 한인 전쟁포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2.
- 김명기. 2001. “국제인도법상 여자정신대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와 국가책임의 성립.” 『인도법학총』 21.
- 김민영. 1994. “1940년대 일본 석탄산업의 노동사정과 조선인 노동자의 ;집단다임;일본 사가현의 니시키 탄광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18.
- 김민영. 1997. “1940년대 초, 일본 석탄광업연합회 소속 탄광의 조선인 노동자 모집상황.” 『한국동서경제연구』 8.
- 김민영. 1998a. “해방 전후 일본 탄광의 정황과 조선인노동자의 고용상태 - 평산탄광의 「반도인관계잡서류철(1945.3.6.-1947.2.14)검토.” 『경제사학』 25.
- 김민영. 1998b. “해방전 일본 탄광의 한국인 노동자(1941-1942)-평산광업소의 「예규철」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
- 김민영. 2000. “강제연행으로 희생된 조선인들.” 『순국』 119.
- 김상규. 2001.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주둔일본군 병사부의 조직과 병력동원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논문』.
- 김운색. 1996. “일본제국주의의 강제동원 정책의 실태.” 『학술원논문집』 제35호.
-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5.
- 남상구. 2005. “전후 일본 정부의 전몰자 유해 정책-한국인 전몰자 유골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9.
- 방선주. 1992. “미국 자료에 나타난 한인 ‘중군위안부’의 고찰.” 『국사관논총』 37.

- 이만열, 김영희. 2000. “1903.40년대 조선 여성의 존재 양태: ‘일본군 위안부’ 정책의 배경으로.” 『국사사관논총』 89.
- 정진성. 1998. “군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73.
- 채영국. 2004a. “한인 포로감시원에 대한 BC급 전범처리와 문제점.” 『한국근현대사연구』 29.
- 채영국. 2004b. “해방 전후 자바지역 한국인의 동향과 귀환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
- 최영호. 2004. “인양원호국 자료에 나타난 仙岐에서 귀환하는 조선인.” 『한일민족문제연구』 7.
- 표영수, 오일환, 김명옥, 김난영. 2008. “조선인 군인 군속 관련 ‘공탁서’ ‘공탁명세서’ 기초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14.
- 표영수. 2002.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한일민족문제연구』 21.

● 투고일: 2016. 2. 15. ● 심사일: 2016. 2. 15. ● 게재확정일: 2016. 2. 20.

| Abstract |

Plaintiff's experience and remembrance of Ukishima maru incident suit

Kim, Ins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ugust 22, 1945 Ukishima maru left Ominato toward Busan. However, 24th August 1945 the ship was sunk into the sea of Maizuru, Kyoto Prefecture. 3700 ~ 12,000 Koreans were aboard.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death toll as 524 people. However, witnesses testified 3,000-8,000 people were killed.

25th August 1992 80 South Koreans filed a lawsuit demanding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Japan in the Japanese court. Although partial victory in the first instance, plaintiffs' demands were finally reject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Who initiated the lawsuit were Son Duhi and Japanese citizens and they helped the Korean plaintiffs. Plaintiffs said that they felt loneliness in the lawsuit process. Because the Korean media and the Korean government were indifferent while the lawsuit proceeded.

Ukishima maru incident was the case in which compulsorily mobilized Koreans died on a large scale. Families of the deceased wanted to solve the deep sorrow by achieving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which ended with great disappointment. One more thing that made the plaintiffs disappointed was the indifference of Korean media and government. Academia, the media, and the Korea government must follow up on the investigation of the Ukishima maru incident and take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Key words〉 Ukishima maru, Liquid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Compulsory mobilization, Forced labor, Japanese occupation period, Oral research